

[※ 압기노트 추록]

[페이지는 2025년도 판을 기준 표시] [추가/변경된 부분에 밑줄표시함]

[p.1] 제2절. 등기사항 / I. 개설 / <추가>

- [주의!] 용어에 혼동이 없게 주의

. 지점의 등기사항 : 회사의 지점의 내용(명칭, 소재지) 또는 지점에 둔 지배인 등은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여전히 유효한 개념임

.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할 사항 /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본지점 공통등기사항)

. 회사의 등기는 본점소재지 등기기록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에 설치한 지점이 있더라도 그 지점의 등기사항 또한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기록에만 기재한다. 따라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임(2025. 1. 31.부터 시행).

[p.7]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I. 등기기록의 열람 / 열람방법 中 /

. 종이 폐쇄등기부 : 관할등기소에 출석 열람 원칙. 종이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이미지폐쇄등기부)에 의한 경우, 관할의 등기소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제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함(2025. 1. 31.부터 시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서면에 열람용임이 표시된다.

[p.8] 제5절 / 제목 변경

제5절. 인감증명 및 전자인감증명서

[p.9] III.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2025. 1. 31.부터 시행) 中 / 마지막 단락 수정

.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증(발급확인번호 등)'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지정 행정기관(등기소, 법원)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지정행정기관 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1회 열람하면 사용된 것으로 봄.

[p.12] II. 신청대리인 / 첫번째 단락

-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음(행위능력 불요. 제한능력자도 가능). 다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한) 업(業)으로 할 수 없다.

[p.19] 제6절. 인감의 제출 / III. 인감의 신고, 개인, 폐인 신고 등 / 인감의 제출(인감신고서 또는 인감 개인(改印)신고서) 中 / <추가>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신고인] : 위임장에 기명날인(인감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인감신고 대리인] : 신고인 날인란에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p.20]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I. 전자신청의 개요 / 6번째 단락 /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함. 전자서명정보는 ①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및 추가인증 수단인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의 인증번호를 송신하고(이 때 OTP 추가인증은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인감의 제출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②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하고, ③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인증서(행정전자서명)를 송신하여야 함

[p.23] 첨부정보의 전자문서화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② 일반적인 첨부정보 /

㉢ 공증인법 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 자체로 송신함(전자문서로 새로 생성하는 것 아님에 주의). [* 참고 :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라 함]

[p.23] 2.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

① 법인 :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 및 추가인증 수단인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의 인증번호를 송신(이 때 OTP 추가인증은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인감의 제출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p.26] 수 개의 등기사항을 일괄신청하는 경우 / 마지막 단락 /

. 신주발행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일괄신청서 :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 등록면허세만 납부(↔ 동 예규에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는 별건으로 납부함에 주의).

[p.26] II. 등기신청수수료 /

- 수수료액
 - . 회사·합자조합의 설립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 35,000원
 - . 본점의 관외이전시 신소재지 등기 : 35,000원
 - . 나머지 : 7,000원

[p.27] 2개 이상의 등기사항 일괄신청시 中 /

- . 법인 설립의 경우 : 지점, 지배인 등기 추가 관계없이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만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과 다름에 주의).

[p.27] 2개 이상의 등기사항 일괄신청시 中 /

- 관련선례(2019년)
 - .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함.
(∵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주식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동 선례에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에는 해당 부분의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상 별건으로 납부하고 있음에 주의).

[p.29]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 I. 등기신청의 취하

- 취하 :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 ∴ 등기관이 등기 완료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즉, 교합전)까지 할 수 있다.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신청한 대표자가 아닌 대표 즉, ‘등기미신청 각자 대표’도 취하할 수 있음.

[p.30] 1번째 단락 中 /

- . 전자신청한 등기신청의 취하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필요). 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을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거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이고 각자 대표이면서 전자신청을 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등기미신청 각자 대표’라 함)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p.61] 7. 상장사 특례 /

- 일반 상장사
 - .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사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2026. 7. 23.부터 시행)로 선임해야 함
 -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독립이사가 될 수 없음

[p.61] 7. 상장사 특례 /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 . 독립이사(2026. 7. 23.부터 시행)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p.93] (2) 신청방식 / 3) 등기사항 /

- 3) 등기사항
 - 존속회사 변경등기(또는 신설회사 설립등기) : 변경사항(또는 설립사항)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상호/본점 및 합병한 뜻’ 기재 [* 변경·설립 사항에는 승계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포함됨]

[p.138]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1. 의의

1. 의의

- 채권자가 기한전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하고 자 할 때 →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는 사건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음.

[p.138]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2. 절차 특칙 <박스 아래 추가>

*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